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51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고동진 · 박성훈 · 박정훈
서일준 · 김성원 · 이인선
최수진 · 김승수 · 박덕흠
박충권 · 안상훈 · 서명옥
나경원 · 주호영 · 인요한
권성동 · 강대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가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급여 수준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의족과 같은 고가 보조기구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극히 제한된 금액만 급여 대상이 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며, 그로 인해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 등 기본권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기적 제도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어

렵고, 보조기구 품목이나 교체 주기도 시대 변화나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절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합리적 교체 주기, 품목 기준 및 적정 지원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질 기준, 지원 비율, 대상 품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인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5조의2(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합리적 교체 주기, 품목 기준 및 적정 지원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질 기준, 지원 비율, 대상 품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인의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